국민동의청원서

| 등록일자 | 2023. 11. 2. |
|-------|--------------------------------------------|
| 동의기간 | 2023. 11. 6. ~ 2023. 11. 18. 국민동의 수 50,429 |
| 청 원 자 | 성 명 유형우 |
| 제 목 |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 |

청 원 원 문

[청원의 취지]

- o 공매도 제도가 시장에서 발휘할 수 있는 순기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근 주식시장에서 발각되는 불법공매도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까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 불법공매도가 상존할 수 있는 공정하지 못한 현재의 주식시장 상황으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은 공정한 투자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보호 또한 실패했다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것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공정한 주식시장과 불법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 및 공매도 전산화 등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현실입니다.
- 우선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하고,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과 제도 및 시스템이 마련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청워 내용]

-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더불어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시적 금지 대상에는 국내외 금융기관과 시장조성자까지도 반드시 포함되어야합니다.)
- 1. 공매도 모든 투자 주체(기관, 외국인, 개인 등)의 상환 기간을 90일로 확정, 상환 기간 연장은 불가.
- 2. 공매도 전산화(실시간 거래되는 수량, 주체 등)를 통한 모든 투자자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회복.
- 3. 공매도 모든 투자 주체(기관, 외국인, 개인 등)의 담보 비율 동일하게 130%로 적용.

- 4. 기업 정보를 우선 수집하여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왜곡하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 전면 폐지와 주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5. 불법 공매도에 관여한 자에게는 가석방 없는 형사 처벌(예외 없이 최소 5년 이상의 실형 부과)로 엄단하며, 공매도와 결탁한 언론의 시세조작 혐의 발견시 불법 공매도 세력과 같은 처벌 부과.
- 6. 불법 공매도에 가담한 국내외 금융기관은 공매도 관련 업무 금지, 재차 적발시 폐업 명령.
- 7.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해당 기간 주식을 보유한 주체에 손해배상, 수익금 10배 이상의 벌금 부과,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영구 거래 불가) 및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 8. 친,인척과의 이해 충돌이 예상되는 금융기관장에 대한 임명 금지.
- 9. 단위 증권사는 특정 종목에 대해 1개월 내 2회 이상 적정 주가 발표를 금지, 적발시 당사자와 그 주변인 및 이해 관계자의 금융 계좌를 포함한 조사 및 처벌.
- 10. 공매도의 폐해가 심각하여 국회 청원자 5만명 이상 동의시 공매도 금지의 즉각적 조치 시행.

투명한 금융 거래의 확보를 통한 한국 주식시장의 국내·외 신뢰 회복과 기업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 공매 제도의 즉각적·대대적·전면적인 금지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매도 관련 제도의 개선된 법률안 통과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할 것을 1,500만 개인주주들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청원합니다.